##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55 발의연월일: 2020. 10. 29.

발 의 자 : 인재근・소병훈・송갑석

기동민 · 김원이 · 최혜영

강선우 • 이해식 • 양연영

문진석 • 박상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환경연구원법」의 업무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食肉)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2017년 살충제 계란사태 대응과정에서 살충제 의심계란에 대한 안전성 검사 지연 문제가 대두되어 소비자와 선의의 생산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바 있듯이,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육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축산물 전부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련 검사·조사·연구를 담당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타 법령 제·개정으로 신설, 변경 또는 삭제된 보건 환경연구원의 수행 업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현재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되지 않은 세종특별 자치시에 동 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환경연구원법」의 담당 업무에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관한 검사·조사를 추가하고 업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 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5조제1항). 법률 제 호

##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광역시·도"를 "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3조 중 "광역시장·도지사"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식육(食肉)"을 "축산물"로, "「위생용품 관리법」"을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위생용품, 장난감"을 "위생용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중 "「악취방지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악취방지법」"으로, "「소음・진동관리법」"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해화학물질"을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① 보건환경연구원	제2조(설치) ①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	
별시・ <u>광역시・도</u> 및 특별자치	<u>광역시·특별자치시·도</u> -
도에 설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의 설치) 특별시장 · <u>광</u>	제3조(지원의 설치) <u>광</u>
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	
다)는 해당 관할구역의 인구수,	
업무량,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	
구원의 지원(支院)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업무) ① 연구원은 제1조의	제5조(업무) 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1
관한 법률」에 따른 <u>감염병</u>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	
<u>증</u> 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2 의약외품, 「화장품법」에 따 른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마약류 관 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 약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 기 · 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 류량,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 는 식육(食肉), 「먹는물관리 법」에 따른 먹는물・수처리 제(水處理劑), 「위생용품 관 리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위 생용품, 장난감,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에 대한 검사 · 시 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3 대기,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토양・농약잔류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 「폐기물관리법」과 「하수도법」 및 「가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u>축산물</u> -
	<u>「지하수</u>
	법」에 따른 지하수, 「위생용
	품 관리법」위생용품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에 따른 실내공기질, 「악취방
	<u>지법」</u>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u>토양, 「석면안전관리법」에</u>
	따른 석면, 「소음·진동관리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개인하수처리시설・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사항

4. ~ 6. (생 략)

② (생 략)

<u> 법 _</u>
「환경보건
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